

5. 施設物의 安全管理에 관한 特別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건설교통부령 제118호 1997. 9. 1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책임기술자는 3년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이나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행하는 5일 이상의 건설안전분야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안전진단인력의 질을 높이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를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안전진단능력을 확충하며,

외국인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지개량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3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한다.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 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영

제7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안전분야에 관한 5일 이상의 교육과정을 매 3년마다 1회이상 이수한 자를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교육원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0조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생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당해 기술인력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 가. 기술자격증 사본
 - 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다.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 라.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또는 개시회 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관할 세무서

장이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③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7 조의 2(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등)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인력중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은 별표 4에 의하고, 학력·경력자의 관

련학과의 인정범위는 별표 5에 의한다. 다만,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4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비 서 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0조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생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당해 국가에 주제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당해 기술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기술자격증 사본
 - 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다.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 라. 외국인등록표등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4.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또는 개시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액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단측정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진단측정장비를 1998년 6월 30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정밀안전진단장비(제5조관련)

1. 공 통
 가.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현미경

- 나. 반발경도측정기(기록지부착형)
- 다. 초음파측정기
- 라. 철근탐사장비
- 마. 철근부식도측정장비
- 바. 염분측정장비
- 사. 코아채취기
- 아. 중성화측정장치
- 자. 도막두께측정기
- 차. 측량기(수준·각도·거리 측정용)
- 타. 록볼트측정기
- 파. 강재비파괴시험장비
 - (1) 침투탐상(PT)
 - (2) 자분탐사(MT)
 - (3) 초음파시험기(UT)
- 2. 교량 및 터널분야
 - 가. 정적 및 동적응력측정장치
 - 나. 내공변위측정기
- 3. 수리분야
 - 가. 유독가스탐지기
 - 나. 관로누수탐지기
 - 다. 금속관탐지기
 - 라. 혹크온메타
 - 마. 절연저항계
 - 바. 유속계
- 4. 항만분야
 - 가. 수중카메라
 - 나. 유속계
- 5. 건축분야
 - 가. 진동측정기
 - 나. 정적응력측정기

[별표 4]

전문분야별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제7조의 2 제1항관련)

전문분야	기술분야	기술자격 등급 및 인정종목	
		기술사	기사 1급
교량 및 터널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철도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항만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토목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토목	토질 및 기초	건설재료시험
	건축	건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수리시설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토목
	안전관리	건설안전	건설안전

비고 : 위 표에서의 전문분야별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위 표의 구분에 의한 기술분야에서 설계·시공·감리·품질관리 또는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표 5]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의 인정범위(제7조의 2제1항관련)

분 야	관 련 학 과
토 목	토목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농공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토목교육과 해양토목과
건 축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교육과

비고 : 학과의 신설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위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과에 대하여는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하여 위 표의 관련학과 중 하나의 학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